

2021년 서울 관광·MICE 사업 대행 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출자출연법”이라 한다) 제21조,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17조, 「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서울 관광 및 국제회의, 인센티브관광, 전시 등(이하 MICE라 한다) 사업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시”가 서울 관광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 및 MICE 사업(이하 ‘대행사업’이라 한다)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행범위) ① “시”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“재단”에 대행할 수 있으며, 세부사업은 [별지 제1호]와 같다.

1. 시민 여가관광 및 관광산업 지원
2. MICE 유치 및 개최지원
3.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협력사업
4. 기타 서울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대행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“시”와 “재단”이 협의하여 대행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대행기간)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대행기간은 2021년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“시”와 “재단”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관리·운영) ① “시”는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“재단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시키고, “재단”은 “시”의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사업의 기획·진행·홍보·대외협력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 2. 홍보물 및 보고서(홍보책자, CD, 결과보고서 등)의 기획·편집·제작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“시”가 지정하는 사항 등
- ② “재단”은 이 약정에 의한 대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·준비·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산관리) ① “재단”은 대행재산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“재단”은 이 협약 체결 이후 대행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의 신·증축, 개·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시”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 또한 대행재산에 포함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“재단”은 대행시설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(홈페이지, 운영 프로그램 개발, 사진, 인쇄물 등)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“시”에 귀속시켜야 한다.

제6조(사업계획) ① “시”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단위사업(별지 제1호)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“재단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“재단”은 “시”의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, 10일 이내에 “시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승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- ③ “재단”은 제2항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“시”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“시”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2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⑤ “시”는 제3조의 대행기간 중 제2조에 의거한 [별지 제1호] 이외의 사업을 “재단”에 추가로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다.

제7조(사업의 수행) ① “재단”은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“재단”은 과업수행 과정상 “시”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적극적으로 “시”의 정책과 브랜드를 홍보하여야 한다.

③ “시”는 “재단”에 사업 관련 회의참석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재단”은 이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.

④ “재단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“재단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,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“재단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소속 근로자,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“재단”은 본 사업 종료 후 각종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,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업성과 평가서·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법령 등의 준수) ① “재단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지방출자출연법」, 「민법」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관계 법령과 “시”의 조례,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다만, 업무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“재단”의 내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.

② “재단”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비 지급 및 관리) ① “시”는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를 “재단”에 지급하되, 그 금액은 “시”의 예산과 “재단”의 사업계획,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“시”와 “재단”이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로 정한다.

② “시”는 협약체결 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“지방회계법 시행령” 제4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“재단”에 사업비 선금을 지급하되, 협약체결 후 “재단”의 청구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총 “사업비”의 70%, 나머지 금액(30%)은 사업 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.

③ “재단”은 “사업비”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는 등 “시”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, “재단”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) ①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“시”가 “재단”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사업원가와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.

②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 및 홍보·마케팅 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란 대행사업만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말한다.

③ 대행수수료는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원가의 2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④ “시”가 “재단”에 [별지 제1호] 이외의 사업을 추가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추가 대행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업비 정산 및 반환) ① “재단”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(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, “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“재단”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“시”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입금 등) ① “재단”은 대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행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익사업 및 제3자 사용·수익으로 발생한 수익금, 후원, 협찬금에 대해서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집행잔액은 “시”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“시”와 “재단”이 합의하여 차년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협약이행의 보증 등) “재단”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“사업비”의 전액 또는 일부 반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“시”에 반납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“사업비”의 청구 시 함께 “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도·감독) ① “시”는 대행사업과 관련한 “재단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“시”는 필요한 때에는 대행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“재단”에 요구하거나 “시”의 소속직원 또는 “시”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재단”의 업무상황·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“재단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“시”가 자료, 회의참석, 보고 등을 “재단”에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“재단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“시”는 “재단”의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재단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5조(민·형사상 책임) ① “재단”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재단”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② “재단”의 귀책사유로 “시”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“재단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“시”의 손해(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)를 즉시 “시”에 배상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협약의 해지 등)** ① “시” 또는 “재단”이 본 협약서를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“시” 또는 “재단”은 상대방이 보내온 해지 사유를 검토한 후 상호 동의하에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.
- ③ 기타 본 협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~제3항의 사유로 동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상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.

제17조(대행재산 등의 반환) “재단”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행재산(대행기간 중 취득한 시설, 장비 등 포함)을 “시”에 인도한다.

- 제18조(협약의 해석)**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 출자출연법」, 「민법」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기타 관계 법령 및 “시”의 조례, 규칙과 “재단”의 정관, 내부 규정을 따른다.
-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“시”와 “재단”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“시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9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은 제3조에 따른 협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

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시”와 “재단”이 서명·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1월

“시” 서울특별시 (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)

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

행정1부시장 서 정 협



“재단”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(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, 9층)

대표이사

이 재



[별지 제1호]

2021년 서울시 관광 MICE 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(안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업명	대행규모	소관부서
계	16개 사업	8,420,500	
1	여행주간 운영	45,000	관 광 정 책 과
2	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	600,000	
3	MICE 유치 및 개최 지원(지원금)	2,670,000	
4	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	200,000	
5	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(대외협력계정)	100,000	
6	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(환대주간)	200,000	
7	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	150,000	
8	장애인,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들이	337,500	
9	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(관광진흥기금,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)	400,000	
10	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	451,000	관 광 산 업 과
11	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	690,000	
12	해외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	200,000	
13	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	356,000	
14	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	894,000	
15	의료관광 활성화	927,000	
16	한류관광 활성화	200,000	